

장학규정

2001년 03월 01일 제정
2004년 03월 01일 개정
2013년 03월 01일 개정
2018년 3월 1일 전문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재학생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외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3조(장학위원회)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교학처장, 외국인학생담당교수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2.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학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학제도의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교내 장학금 종별의 신규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장학생 선발

제7조(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선발 기준이 되는 학기에 등록한 자
3. 해당 장학금의 수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 4 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

제8조(구분) 본교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9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우회장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4. 부부 장학금
5. 재직자 장학금
6. 교직원 장학금
7. 근로 장학금
8. 학보사 장학금
9. 특별 장학금

제10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학교 외부에서 후원이 있을 경우 지급한다.

제11조(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원우회장 장학금은 원우회장선거에서 원우회장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며 소속된 학과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2. 성적우수 장학금은 목회학석사과정 학생들 중 직전 학기 성적우수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3. 외국인유학생 장학금은 대학초청으로 본교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부부 장학금은 부부가 본교의 동일한 석사과정에 동시에 재학할 경우 지급하며 한 명에게 해당학과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5. 재직자 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자격 : 상담심리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대안교육학석사, 문화예술치료학석사, 미용치료학석사, **목회상담학석사**과정에 신입학, 편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들 중 학생의 직업이 교역자, 교육공무원, 또는 소속학과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
 - 나. 재직자 장학금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업료의 20%를 지급한다.
 - 다. 위원회에서 재직자장학금 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은 매 학기 종료 전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을 위하여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아 등록할 수 있다.
6. 교직원 장학금은 본교의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가 본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전액 지급한다.
7. 근로 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총무처, 도서관 등 학교의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한다.
8. 학보사 장학금은 본교에서 발간하는 학보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일정액을 지급한다.
9. 특별장학금은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서 선발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 ②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후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을 지정하였을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르며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각 학과의 수혜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12조(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입학금, 수업료 등의 감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휴학 및 제적
2. 대내외에서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은 자
3.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4.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에 부당한 자

제14조(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 학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중수혜 금지)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위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학규정은 폐지한다.